

# 정기(기동점검) 점검 결과보고

## [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 포함)조성공사[장기1차]]

- 점검일시 : 2020.04.07 (화)
- 점검결과
- ◆ 점검자 : 박상종

### ○ 전도재해 예방(토목부)

- 흙막이가시설 설치를 위해 작업 중인 천공기는 후면에 거치된 이동식 발전기가 상부 와이어 외 고정된 곳이 없고 와이어에 설치된 혹 또한 안전장치(해지장치)가 없어 항타기 요동 및 이동시 쇠사슬 이탈과 함께 항타기 본체에서 이동식 발전기가 전도될 우려가 있으니 하부 볼트로 고정 등 안전조치 바라며,

- 이동식발전기 하부 유압파이프는 이탈방지 고리가 유압파이프 연결부 전후에 체결되어 야하나 한쪽에만 체결되어 있으니 보완 바람.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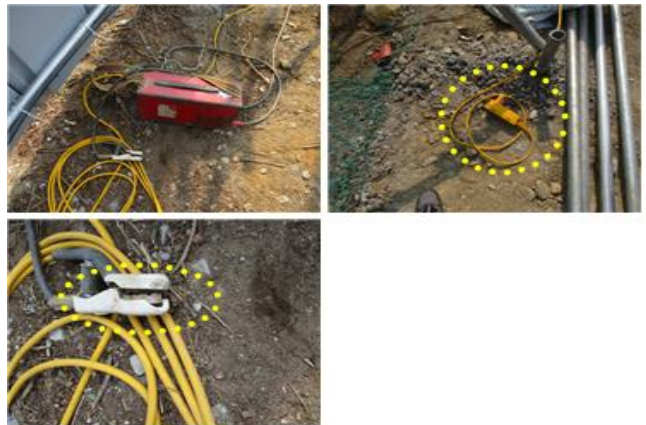
### ○ 감전재해 예방(토목부)

-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가설전선(콘센트)은 접지 테스트 결과 미접지로 측정되니 접지 유무를 점검하고 접지가 되도록 보완하고,

- 용접기 홀더는 절연물 파손 및 유격이 있으니 근로자 감전재해 예방을 위해 보완 바라며,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기구는 반입 전,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부착 바람.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021(용접작업 및 용접기)



○ 흠막이가시설 안전(토목부)

- 옹벽구간 자립식 흠막이가시설 우각부에 설치된 토류판은 일부 길이가 짧아 엄지말뚝에 지지되지 않은 토류판이 있으니 보완 바람.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 유지)



○ 흠막이가시설 안전(토목부)

- 자립식 흠막이가시설의 굴착깊이는 구조계산상 6~7m까지 가능하나 실 시공시 변위문제가 다수 발생한 사례가 있는바, 깊이 5m까지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5m초과 설치할 경우 감리단(기술지원감리 등)과 안정성 검토후 시공바라며,

- 자립식 흠막이가시설의 수평변위 억제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띠장 설치 검토 요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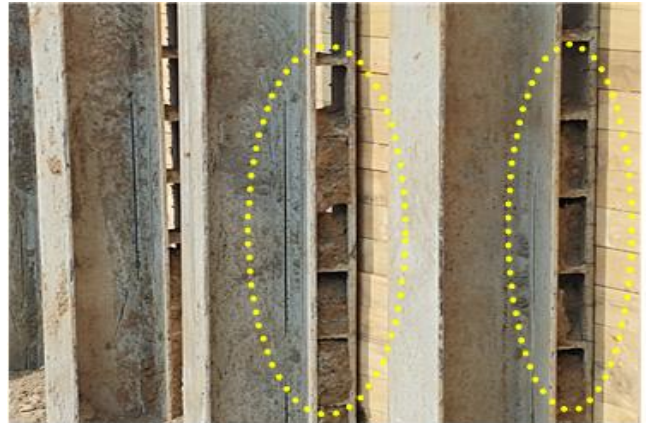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 유지), 제52조(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 품질관리(토목부)

- ○ 품질 관리에 관한사항

- 옹벽구간 자립식 흠막이가시설 합벽 시공시 H-pile 배면 철근 삽입구간의 토사를 제거하여 철근 및 콘크리트에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시공 바람.



○ 기타 안전관리(토목부)

- 우기 풍수해 예방을 위해 보관중인 수방자재는 공사용 자재와 혼재되어 보관되고 있어 수방자재임을 인지하기 어려워 우천시 신속한 수방자재 활용이 어려우니 수방자재는 수방계획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별도 구분하여 보관 또는 별도 수방함을 설치하여 보관 바람.
- 사면은 일부 사면보호 덮개가 미설치된 구간이 있으니 우천시 사면 유실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면보호 덮개를 설치 바람.



○ 기타 안전관리(토목부)

- 현장 진출입로는 주정차 된 차량과 진출입로를 횡단하는 시민, 토사 반출 덤프트럭 등이 혼재되어 통행하고 있으나 유도자 또는 안전시설이 없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적절한 안전시설 설치 또는 유도자를 배치 바람.

